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**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 입법예고**  
 - 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, 반려동물 생산업 관련 시설인력 기준 강화 등 -

- 《 주 요 내 용 》
- ◆ (반려견 안전관리 강화)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(m)로 제한
    -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
      - \* 다만, 반려견놀이터 등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길이 가감 가능
  - ◆ (반려동물\*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) 동물생산업 시설·인력 기준 강화,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선
    - \* 반려동물(6종)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
  - 동물생산업 관련 영업장의 인력기준, 사육설비 및 출산주기 등 강화
    - \*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 → 50마리/인), 출산 휴식기간 연장(8→10개월) 등
  -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를 의무화 하고 동물경매업자에 대해 동물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
  - 동물장묘방식에 수분해장\* 추가(기존 화장, 건조), 동물생산·판매·수입업 및 반려동물 가정돌봄(펫시터) 영업 범위 명확화 등
    - \* 수분해장 : 강알카리용액(pH12이상)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
  - ◆ (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) 주요 축종별 사육·관리 관련 기준 보완
    - 동물 사육 시 밝기, 공기관리(암모니아 농도), 돼지 절치·거세시기 등 주요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을 마련하여 입법예고(40일간, 2019. 9. 11 ~ 10. 21) 한다.
- 입법예고에 포함 될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(안)은 다음과 같다.

<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>

- 동물 외출 시 목줄(가슴줄)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 강화
  - 목줄(가슴줄)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,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
  - \* 다만, 반려견 놀이터 등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가능

<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>

- (동물생산업)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·인력 기준 강화,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 명확화
  - (인력기준)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
  - (사육설비)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,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\*
  - \*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(2018.3.22) 이후 신규 영업자는 사육설비의 2단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, 동물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도 동일하게 적용
  - (평판비율)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(뜰장) 내 평판\* 비율을 30%에서 50% 이상으로 상향 조정
  - \* 동물의 휴식을 위해 바닥이 평평한 판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. 신규 영업자는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(2018.3.22) 이후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(뜰장) 설치 금지
  - (출산 휴식기)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※출산 : (현행) 2년 3회 가능 → (변경) 2년 2회 가능

- (영업범위) 동물생산업,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
- (행정처분)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연장
  - \* 1차: 영업정지 7일, 2차: 15일, 3차: 1개월 → 1차: 15일, 2차: 30일, 3차: 3개월
- (동물판매업)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의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 부과
- (동물장묘업)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\* 방식을 추가하고,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(화장·건조·수분해) 발급 의무화
  - ※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 '네거티브규제 전환 과제', '규제신문고'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
  - \* 강알카리용액(pH12이상)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
- (동물위탁관리업) 가정돌봄(펫시터,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)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화
  - \* (영업등록범위) ▲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▲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(2019년 기준 1,745,150원)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
- (동물미용업) CCTV 설치 의무화(현행 장묘업, 위탁관리업만 의무화), 이동식 미용차량의 개조(튜닝) 기준\* 마련 등
  - \* 미용 차량 소독장비, 작업대, 급·오수탱크, 조명·환기시설, 전기시설 등
- (동물운송업)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\*, CCTV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(운전경력 2년 이상, 연령 만20세 이상) 강화
  - \* (현행) 모든 자동차 → (변경) 승용, 승합, 화물밴형 자동차 ※특수형, 이륜차 제외

## <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>

-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·관리 기준 설정
  - 동물 사육 시 밝기, 공기관리(암모니아 농도), 깔짚(육계) 및 절치·거세(돼지)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”고 하면서 “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(안)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참고로,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<http://www.mafra.go.kr>),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(kimhs5@korea.kr), 우편((우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,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) 또는 팩스(044-863-9025)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.

**참 고**

**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**

구 분		주요 개정안
시행일	공포 후 즉 시	동물 사체 처리방식 추가(동물수분해장), 동물운송업 등록 가능 차량 대상 축소(모든 자동차 → 승용차, 승합차, 화물벤형), 이동식미용차량 등록 기준(튜닝 등) 적용, 동물의 대면판매, 동물의 출산 휴식기간 연장(8→10개월)
	3개월 이후	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개체관리카드 필수기재사항(영업등록 번호 등) 확인
	6개월 이후	동물 생산·판매·수입업 영업등록범위 명확화에 따른 영업등록, 동물위탁업(펫시터)·위탁중개업 영업 등록,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(50마리/인) 적용, 동물사체 장례(화장·건조·수분해)증명서 발급, 맹견 (핏블테리어)의 범위 명확화
	1년 이후	목줄 2미터 이내 의무,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 확대, CCTV 설치(미용업, 운송업), 동물운송업자 자격 기준 강화(만 20세, 운전경력 2년 이상)